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20 발의연월일: 2020. 7. 3.

발 의 자:최종윤·안호영·이인영

김영진 · 김진표 · 강선우

장철민 · 인재근 · 이워욱

김민기 · 노웅래 · 유동수

조승래 · 조오섭 · 정춘숙

양향자 • 양이원영 • 안규백

주철현 · 홍성국 · 송옥주
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2020년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제기되었음.

이에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 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,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 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·이행하고, 현장에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7조제3항 신설 및 제8조제4항).
- 나.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경우 그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「행정조사기본법」의 사전통지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을 명시함(안 제43조).
- 다. 도급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 일시·내용·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, 작업의 유해·위험의 정도가 심할 경우 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(안 제64조제1항).
- 라.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를 공개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함 (안 제72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"수립·공표"를 "수립·공표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"을 "고용노동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별 세부시행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고용노동부장관은"을 "고용노동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따른다.
- 제6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7. 작업 시기·내용 등의 확인

8. 작업의 유해·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· 내용 등의 조정

제7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7조(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 제7조(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 본계획의 수립・공표) ①・② 본계획의 수립・공표 등) ①・ ② (현행과 같음) (생 략) <신 설>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 획에 따라 지역별 세부시행계 획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제8조(협조 요청 등) ① 고용노동 | 제8조(협조 요청 등)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7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별 세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 부시 행계획-----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・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지사는-----

정할 때에는 사업주, 사업주단체,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43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의 확인 등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③ (생 략)

-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,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.
- 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 방조치)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 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제43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
의 확인 등) ①·② (현행과 같
$\frac{\Diamond}{\Box}$)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
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할
경우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7
조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따
른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⑤</u> 제4항
<u>.</u>
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
방조치) ①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

②・③ (생략)

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등) ①・② (생 략)

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 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 존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④·⑤ (생 략)

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작업 시기·내용 등의 확인 8. 작업의 유해 ·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· 내용 등의 조정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제72조(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 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